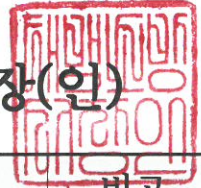


태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(업무) 지정 공고(안)

『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3조 제2항에 따라 태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(업무)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0. 6. 11.

태백소방서장(인)



부 서		가입금지 직책(업무)		비고 (가입대상)
		인원	해당업무	
합계		13명		140명
소방행정과	소방행정계	2명	담당, 인사(직장협의회담당자)	3명
	예산장비계	3명	담당, 용도, 회계	2명
방호구조과	방호사법계	-	-	3명
	예방민원계	-	-	10명
	구조·구급계	-	-	3명
현장대응과		3명	현장지휘담당	10명
황지119안전센터		1명	센터장	38명
장성119안전센터		1명	센터장	20명
철암119안전센터		1명	센터장	20명
화전119안전센터		1명	센터장	18명
119구조대		1명	구조대장	13명

《문 의 처》 태백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우영(033-580-8211)